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5,273,927	10,358,218
일반회계	313,470,818	9,404,125
특별회계	31,803,109	954,093
기타특별회계	31,803,109	954,093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318,686	69,56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8,723	14,96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027,110	300,813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3,495,649	104,86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82,689	32,481
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2,602,037	78,061
기반시설특별회계	143,569	4,307
섬진강댐특별회계	11,634,646	349,039

제 2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084,902천원」과 같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한다